「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정 창 호

2. 제안이유

가. 청년의 문화·여가 및 교류·소통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함

나. 설계·인허가·공사 등 시설 조성 전반에 전문적인 사업관리와 기술적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, 관련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함

다.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(1) 추진근거

- 산업부, 문체부, 국토부 합동「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」(2024. 9.)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(2025. 3.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2) 필요성 : 시설 기획·건축 분야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, 토목·건축 기술 인프라와 공사 감독·관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청년문화센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전반

(1) 청년문화센터 조성 관련 용역 발주 및 관리

(2) 청년문화센터 조성 공사 시행 등 ※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(CMR) 추진 예정

라. 위탁시설 : 해당없음(시설 조성사무 위탁)

마. 위탁기간 : 2027. 4. ~ 2030. 3.(예정)

※ 재생계획(변경) 승인 후 위탁 추진 /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위탁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총 8,218.5백만원(국 5,688.5 도 759 시 1,771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
		2026년	2027년	2028년
계	8,218.5	2,343.5	2,547	3,328
국 비	5,688.5	1,623.5	1,737	2,328
도 비	759	216	243	300
시 비	1,771	504	567	700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「청년문화센터 건립」 공공위탁 추진계획(안) 결재('26.9.18.)

아. 위탁구분 : 신규위탁

자. 위탁유형 : 시설형

4. 부서의견

○ 단계별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시설 조성사업으로 전문적인 사업 추진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,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제300회 임시회 동의 후 심의 예정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 : 해당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동의안은

-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문화·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설계·인허가 및 공사 관리 등 전문적인 사업 수행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, 관련 경험과 기술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됨.

- 다만, 위탁 종료는 2030년 3월, 준공 예정은 같은 해 12월로 되어 있어 준공·정산·시설 인계까지 관리가 지속되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- 또한 위·수탁 협약 시 총사업비와 위탁사업비의 차이 및 별도 건설사업관리 수수료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, 협약에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, 조성 이후의 운영주체와 운영비, 청년의 이용 수요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